##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2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이종성·정운천·임이자

김용판 · 한무경 · 김석기

허은아 · 강기윤 · 김성원

최승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 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집중치료를 위하여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7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
	기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
	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